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14

발의연월일: 2024. 7. 1.

발 의 자:송옥주·정성호·이병진

한정애 • 문진석 • 이재관

박 정・박해철・전용기

이해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는 등 양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되었음.

다함께돌봄센터는 이러한 아동 돌봄을 위하여 마련된 시설로 만 6 세에서 12세 미만의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에게 균형 있는 급식과 간식을 제공하고,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돌봄서비스 제공하며,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하는 역할을 함.

그러나 다함께돌봄센터는 '24년 5월 기준 전국에 1,130개소에 불과하여 영유아 보육 지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임.

이에 부족한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초등 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확보하며, 아동이 거주 공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300세대 이상의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여야 함(안 제44조의2).

법률 제 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여야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 이 경우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300세대 이상의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			
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			
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			
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 <u>운영할 수 있다</u> . <후단 신	<u>운영하여야 한다</u> . 이 경우 관할		
<u>설></u>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설치 · 운영하여야		
	<u>한다.</u>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300세대 이상의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u>⑤</u> (생 략)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		